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 입
인 자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판매기업용)

(e-안심팩토링대출용)

20 년 월 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채무자) : _____ (인)
주 소 :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출채권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전자방식 외상 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조항을 합의합니다.

제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

- ① 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 라 함은 매출채권의 매입, 매출채권의 관리회수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대출 거래를 말합니다.
- ② 은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 1항의 매출채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약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의한 거래 범위 내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은행이 택하는 것에 한합니다.

제2조 유사계약의 협의

본인이 은행 아닌 다른 사람과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이 이 약정의 목적달성을 지장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하기로 합니다.

제3조 매출채권매입 거래조건

이 계약에 의한 매출채권의 매입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이 수 개로 되어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V”표시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과목 (여신종류)	외상매출채권매입(팩토링)	
취급수수료	매출채권매입 건당	원
매출채권 양도 및 양도대전 지급시기	<input type="checkbox"/> 본 약정에 의한 여신거래기간 중 제5조에 따라 은행 앞으로 자동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전의 지급시기는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양도대전의 지급방법	<input type="checkbox"/>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의 만기 결제대전으로 지급받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취급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출채권매입대전의 만기입금시 차감 지급하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제4조 매출채권매입 수수료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매입거래에 대한 보수로서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수수료 및 수수료 지급시기에 은행이 따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5조 매출채권의 양도

- ① 본인은 이 매출채권 거래 약정과 관련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거래처(매출채권의 채무자인 중심업체를 말하며 이하 “거래처”라 함) 앞 포괄채권양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은행에게 위임합니다.
- ② 이 매출채권거래 약정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채권명세서를 통보 받는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은 이 약정에 의해 채권 양도된 것으로 볼니다.
- ③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양도 통지서를 거래처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니다.
- ④ 은행은 제2항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으로 매입한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해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이 실행될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6조 매출채권의 회수 및 협력

- ① 은행은 제3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을 그 권리자로서 직접 관리 회수합니다.
- ② 제1항의 매출채권 회수에 있어서 거래처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그 회수의 시현에 적극 협력 하기로 합니다.

제7조 매출채권매입대전의 지급시기

본인은 은행이 제3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전을 개별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 받기로 합니다.

제8조 매출채권의 환매

- ① 은행이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방식외상채권대출이 수반되지 않고 매입한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증도에 취소되거나, 거래처의 상환능력에 관한 사유로 말미암아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거절된 때에는 본인은 은행에 대하여 그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지며, 즉시 자동환매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은행이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방식외상채권대출을 실행하여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라도, 매입한 매출채권이 상품의 수량, 품질, 가격, 사후관리 등 상거래관계로 말미암은 사유에 의하여 지급 거절된 경우에는 당연히, 또 지급 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본인은 곧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지며, 환매절차 및 방법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9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를 준용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매출채권이 환매된 때에는 그 매출채권을 본인앞으로 재양도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이 경우 매출채권 재양도에 관한 거래처앞 통지는 본인의 요청 및 비용부담으로 은행이 하기로 합니다.
- ④ 본인은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를 진 경우 환매의무발생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지급 받은 해당 매출채권대전을 곧 상환하기로 하며,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

- ① 제7조의 매출채권매입대전 지급시기 도래 전에 본인이 용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조건 및 기타 은행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채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여신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V" 표시합니다)

여신과목 (여신종류)	전자방식외상채권대출 (팩토링채권)		거래구분	한도거래
여신한도금액	금		원	
여신개시일	년 월 일		여신기간 만료일	년 월 일
개별여신기간	개별 매출채권의 만기일까지로 하되, 최장 180일 이내로 합니다.			
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금리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거래처 기준으로 산정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제9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로 합니다. 연체기간이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개월 초과인 경우 : 연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여신실행 방법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개별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의 결제대전 및 회수금 등으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자의 지급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실행시에 개별 매출채권 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 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본인은 제2항에서 정한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11조 감액, 정지

-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본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제9조에서 정한 한도액 및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한도액을 줄이거나 매출채권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나.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본인 또는 거래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 가.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외부신용평가기관 또는 당행 신용평가에 따른 당해기업의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나.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 의한 감액의 경우에는 감액으로 말미암아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양도 분은 곧 반환 받거나 환매하고,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대출 분은 곧 갚기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12조 대출금의 변제 등

- ① 본인이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은행 소정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곧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
1. 제8조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가 발생한 때.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 의한 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한 때.
- ② 본인이 제1항에 의한 변제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지연 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3조 통지의무

본인은 은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 거래처의 재산, 경영, 업황, 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 관한 종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은행 앞으로 이를 통지합니다.

제14조 양도 · 질권설정의 금지

본인은 은행의 사전의 서면승낙 없이는 이 약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담보권의 이전

본인은 은행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곧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 인적담보(근 담보권을 포함합니다)를 은행 앞으로 이전하고 은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제16조 상환자격 유지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격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의 약정의 일부로 볼니다.

구분	20 . .	20 . .	20 . .	20 . .	20 . .
부채비율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비율	%	%	%	%	%
()비율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 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종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본인은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은행이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7조 자료의 제출 등

- ①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한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 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 예상표 등
 3. 매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 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ISO,특허권 등), 노사분규획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 평가 시 기업의 외환 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 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18조 협의사항

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	본인	(인)
--	----	-----

20 년 월 일

본인 (채무자) : _____ (인)

주 소 :

